

94. 4. 22

조례정비(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소관 조례 : 1건)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조례 : 10건)

- 심사건수 : 11건
-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건
 - 수정안가결 1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 심사 목록

내무위원회 소관

1.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심 사 보 고 서

94. 4.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우승기 내무위원장의 11인
- 나. 제출일자 : 93. 12. 7
- 다. 회부일자 : 93. 12. 23
- 라. 상정일자 : 94. 3. 18
- 마. 재상정일자 : 94. 4. 22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이재영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반의 획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
- 당해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통장에 위촉하고 인구노령화에 따라 통장연령 상향조정
- 일반예비군에 대한 통장 우선 위촉조항을 삭제하고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용어 정비
- 통의 규모를 광역화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수당지급조항 삽입

나. 주요골자

- 권위주의 시대의 관주도 행정용어를 자치시대에 걸맞은 용어로 변경(제2조)
- 아파트 고층화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소항에 삽입(제3조)
- 인구고령화에 따라 통장 연령을 50세에서 70세로 상향 또는 단서조항 변경(제5조제2항1호)

- 반장의 남·여구분 및 일반예비군 우선 위촉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원하는 자를 위촉하는 임의 규정 삽입

3. 전문위원 설명요지(전문위원 허면)

동 조례의 내용중 어색한 행정용어의 변경 및 인구분포의 고령화 및 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통장 임명 대상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반장의 남여구분 및 일반예비군인 자의 우선 위촉 단서조항을 폐지하고자 한 것임.

통의 획정기준을 확대하여 4-24개반으로 하고 통장의 수당을 그 규모에 따라 조정 지급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동법시행령 30조 1항에 근거한 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자면 차등지급시 지침에 위반될 것이며 동 지침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사항으로 법규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대법원 판례 86누 484호 1987. 9. 27)보면 동 조례에 통장 수당의 차등지급근거를 삽입시 자치재정권과 국가의 예산편성 감독권이 상치하여 논란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상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과의 상치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지 못했으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됨.

5. 수정안요지

가. 제안년월일 : 1994. 3. 31

나. 제안자 : 손영일 의원

다. 수정이유

- 통의 규모 광역화로 인한 통장의 업무의 과중과 그에 따른 차별적 수당지급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과 상치되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차별적 수당 지급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현행유지

라. 수정 주요골자

- 통의 획정기준을 4개반-6개반으로 현행 유지(안 제3조 2항)
- 통장 수당의 40만 한도내 지급규정을 삭제 현행유지(안 제3조 2항)

○ 인구 고령화로 인한 통장 연령을 70세까지를 60세까지로 조정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1.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구성한다"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중 "범위내에서" 다음에 "공동주택 및"을 삽입한다.

동조 제2호중 "6개반으로 구성한다"를 "24개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 한도내에 그 규모에 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를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지원자 포함)으로서"하고 단서조항중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신규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2항 제2호중 단서조항중 "일반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를 "자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에 대한수정 (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 제2호중 "24개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 한도내에서 그 규모에 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를 "6개반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안제5조제2항제1호 "관할구역내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 여(지원자 포함)으로서"를 관할구역내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6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 여(지원자포함)으로서"로 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u>말단침투</u>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p>	<p>제2조(하부조직) <u>추진과</u></p>	<p>제2조(하부조직) <u>추진과</u><좌동></p>
<p>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2.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p>	<p>제3조(획정기준) 1. <u>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u> <u>범위내에서 공동주택 및</u> 2. <u>24개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 한도내에서 그 규모에 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u></p>	<p>제3조(획정기준) 1. <u>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u> <u>범위내에서 공동주택 및</u><좌동> 2.<현행유지></p>
<p>제5조(통, 반장의 위촉) ① (생략) ② 통,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p> <p>1. 통장은 당해 통 <u>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u></p>	<p>제5조(통, 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1. <u>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한</u></p>	<p>제5조(통, 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1. <u>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한</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p> <p>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p> <p>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p>	<p>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지원자포함)으로서.....</p> <p>.....</p> <p>.....</p> <p>.....</p> <p>.....</p> <p>다만 신규 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위촉할 수 있다.</p> <p>2.</p> <p>.....</p> <p>.....</p> <p>.....</p> <p>.....</p> <p>.....</p> <p>.....</p> <p>.....</p>	<p>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지원자포함)으로서.....</p> <p>.....</p> <p>.....</p> <p>.....</p> <p>.....</p> <p>다만 신규 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위촉할 수 있다.</p> <p>〈좌 동〉</p> <p>2.</p> <p>.....</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p> <p>3. (생략)</p>	<p>.....</p> <p>자 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만 한하여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p> <p>3. (현행과 같음)</p>	<p>.....</p> <p>자 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만 한하여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좌 동></p> <p>3. (현행과 같음)</p>